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II) - 개혁내용을 중심으로 -

정보신청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

I. 입법의 취지

심각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또는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수만 명을 위하여 고안된 법적 보호제도는 오늘날 대략 70만 명(성인 80명중 한 명)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68,000개의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기존 보호제도는 크게 두 줄기였다. 첫째, 민법전에 삽입된 무능력자인 성인의 권리개선에 관한 1968년 1월 3일 법률(제 68-5호)은 법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성하였다(사법구조, 후견 등). 둘째, 사회보장법전에 삽입된 1966년 10월 18일 법률(제66-174호)은 성인을 위한 후견인에 대한 사회보장수당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제도로는 오늘날의 불확실성이나 소외와 같은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

도 발생할 수 있고,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는 법적인 그것도 제한적인 보호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에 미흡했다. 따라서 법적 보호와 함께 사회적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II. 입법의 경과

당시 법무장관 Pascal CLÉMENT이 사회보장 위임장관 Philippe BAS와 긴밀히 협조하여 마련한 법안은 2006년 6월 30일에 국사원(Conseil d'État)에, 2006년 11월 28일에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①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능력자가 될지 모를 그 날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지명할 수 있게 하고, ② 보호의 대상을 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피후견인의 인격으로까지 확대시키며, ③ 후견의 임무를 맡은 수임인에게 피후견인의 삶의 조건 보장이란 사명을 부여하여

필요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는 2007년 1월 16일과 17일에, 상원에서는 2007년 2월 14일과 15일에 독회(lecture)가 있었다. 그리고 양원합동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가 2007년 2월 20일 소집되어 최종 심의를 거친 끝에, 2월 22일 최종적으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법안의결 다음 날, 상원의원 60명이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일부 법조문이 최초의 입법안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 위헌심사를 요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1일자 결정에서, 일부 조문들이 당초 입법취지와 관련성을 상실하였으며 취약한 성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결국, 위헌선언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성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개선을 규정하는 2007년 3월 5일 법률(제2007-308호)로 공포되어, 2007년 3월 7일자 관보 제56호에 게재되었다.

Ⅲ. 주요 골자

1. 형식

이 법은 주로 민법전 제1편 제11장과 사회보장법 제4장을 개정하였다.

2. 목표

이 개혁입법은 현실적으로 신체적 능력의 의학

적 악화(alteration médicale)를 겪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후견제도의 정책적 수정을 목표로 한다.

3. 주요 내용

(1) 그동안 법적 보호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불확실한 상황(situation de précarité)과 사회적 소외(exclusion sociale)도 새로운 보호조치와 사회적 지원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2) 보호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율권과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가족과 공공단체의 책임이다.

(3) 이 법은 판사와 검사에게 후견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가정방문권, 후견인 소환권, 후견자적 박탈권, 제명권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도 보충성의 원리(principe de subsidiarité)에 입각하여, 판사로 하여금 취약한 개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그보다 더 가벼운 다른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장될 수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 판사는 개인의 취약성과 필요에 엄밀하게 비례되고, 그의 상황에 완전히 맞춰진 보호조치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4) 법적 보호에 드는 비용은 피보호자의 부담으로 하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사회원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원칙(principe de transfert de compétence vers les collectivités locales)에 따라



전액 국가에 의해 보상된다.

(5) 이 법은 또한 취약한 개인을 한편으로 장래 보호의 위임(mandat de protection future)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 더 정중한 절차규칙을 통해 보호의 중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래 보호의 위임'은 각자로 하여금 미리 선택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살펴줄 사람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해당하는 보호기관을 예견할 수 있게 해 주는 혁신적인 조치이다. 여기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수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된다.

(6) 본 개혁은 재산뿐만 아니라 인격 자체에 대한 보호에도 주력하고 있다. 후견인의 임무 범위가 부동산이나 계좌 같은 것만이 아니라 피보호자의 추억의 기념품이나 귀중품 그리고 의료기구 같은 것까지도 보살피도록 하고 있다.

(7) 이 법은 보호대상 개인의 권리와 의사 및 그 가족과 이웃의 의견과 역할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8) 끝으로 이 법은 가족 외 후견인의 권한과 관리를 강화하는 실행조건을 통합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또 그 임무에 대한 비용조달에 관해 더 공정하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명령에 위임해 둔 상태이다. 후견에 관해 취해진 조치들은 매 5년마다 판사에 의해 재검토될 것이다.

4. 시행 시기

이 법은 각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의회(conseil

général)가 새 조치들의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특히 장래 보호의 위임 또는 외부 후견인의 관리 조치에 관한 조문들은 공포 즉시 시행될 것이다.

IV. 평가와 전망

최초의 근대 민법전을 편찬한 나라답게 프랑스의 민권보호 또한 앞서나간다고 봐야 하겠다. 사실 기존의 법적 보호제도가 큰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개정작업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수만 명을 보호대상자로 예정한 입법이었다는 점이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가족을 중시하면서도 결코 그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현실을 제도에 담은 것이다. 언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제대로 법적으로 유의미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될지 모르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사회가 전통적인 대리나 후견을 넘어서는 지원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깊이 새겨야 할 점이라 생각되고, 프랑스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현재의 활기찬 생활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오 승 규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